



금산군의회
GEUMSAN COUNTY COUNCIL

2026. 4. 21.(화)
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

-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의안 검토보고서

검토안건

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
비용 지원 조례안

의안심사특별위원회
전문위원 윤주현

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36호
- 제 출 자 : 정옥균의원 등 3인
- 제 출 일 : 2026. 4. 8.
- 회 부 일 : 2026. 4. 8.

2. 제안이유

-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,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-93호) 된 LPG연료 소매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-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- 지원 범위 및 대상, 절차(안 제5조~제7조)
- 점검 및 자료제출 등(안 제8조)
- 사업비의 반환 등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조, 제5조, 제32조, 제46조
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(2026. 4. 9. ~ 2026. 4. 16.) : 제출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세 판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적기 안전검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, 그 필요성과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,
- 또한 유사 입법례가 다수 존재하고 시행 준비기간도 확보되어 있어,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제도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